



노무법인 SN
Labor Law Corporation S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무법인 SN
Labor Law Corporation SN

노무법인 에스엔 대표노무사 배경린

keunsori@naver.com

<http://blog.naver.com/nomus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 · 유기주석 · 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 · 크실렌(xylene) · 스티렌(styrene) · 시클로헥산(cyclohexane) · 노말헥산(n-hexane)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 · 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중대산업재해 책임주체 & 처벌대상

▶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한편,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설명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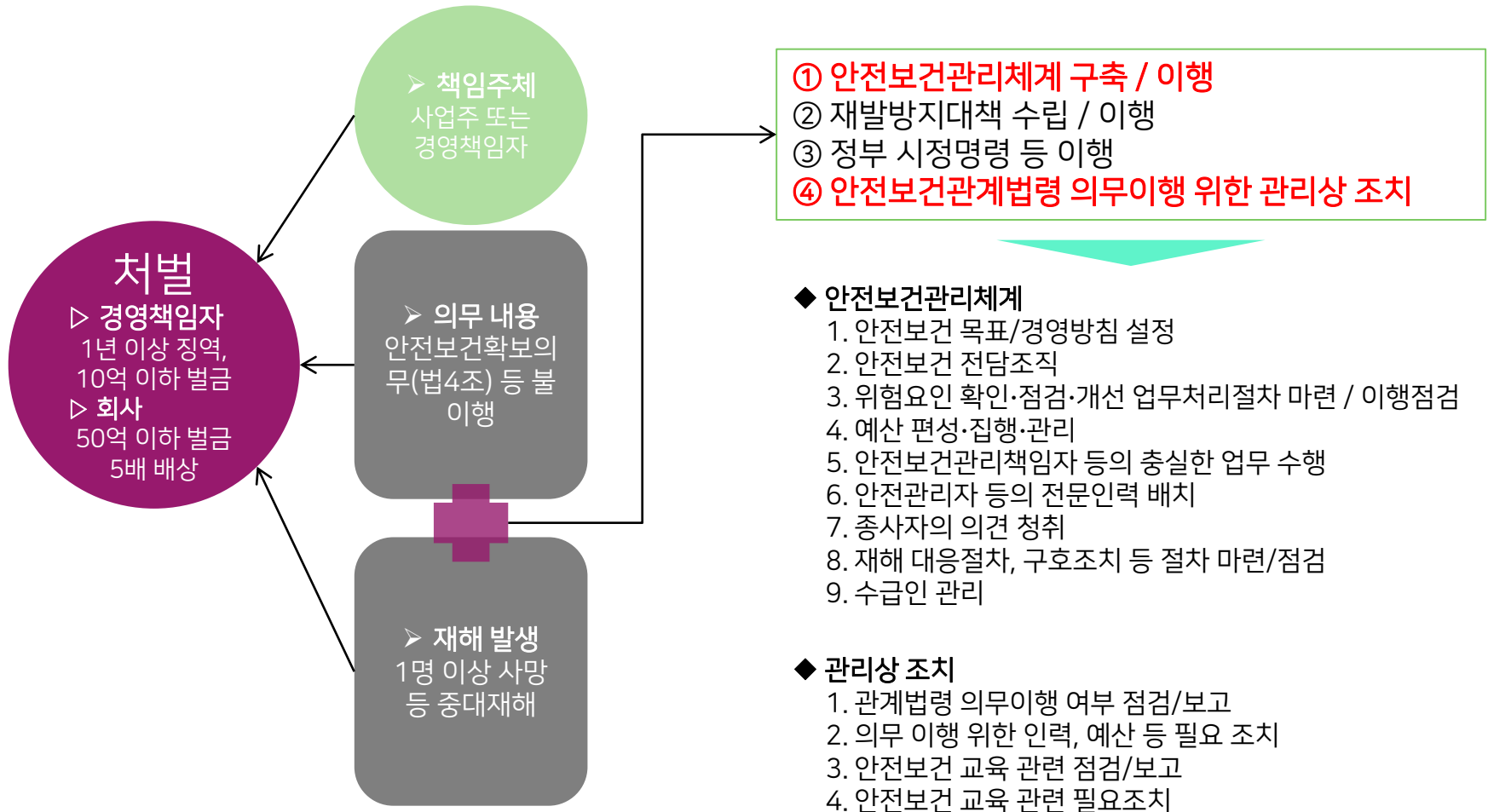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한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 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확대 : 대인적, 대물적 범위

중대재해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설명자료(고용노동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 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

제4장 보칙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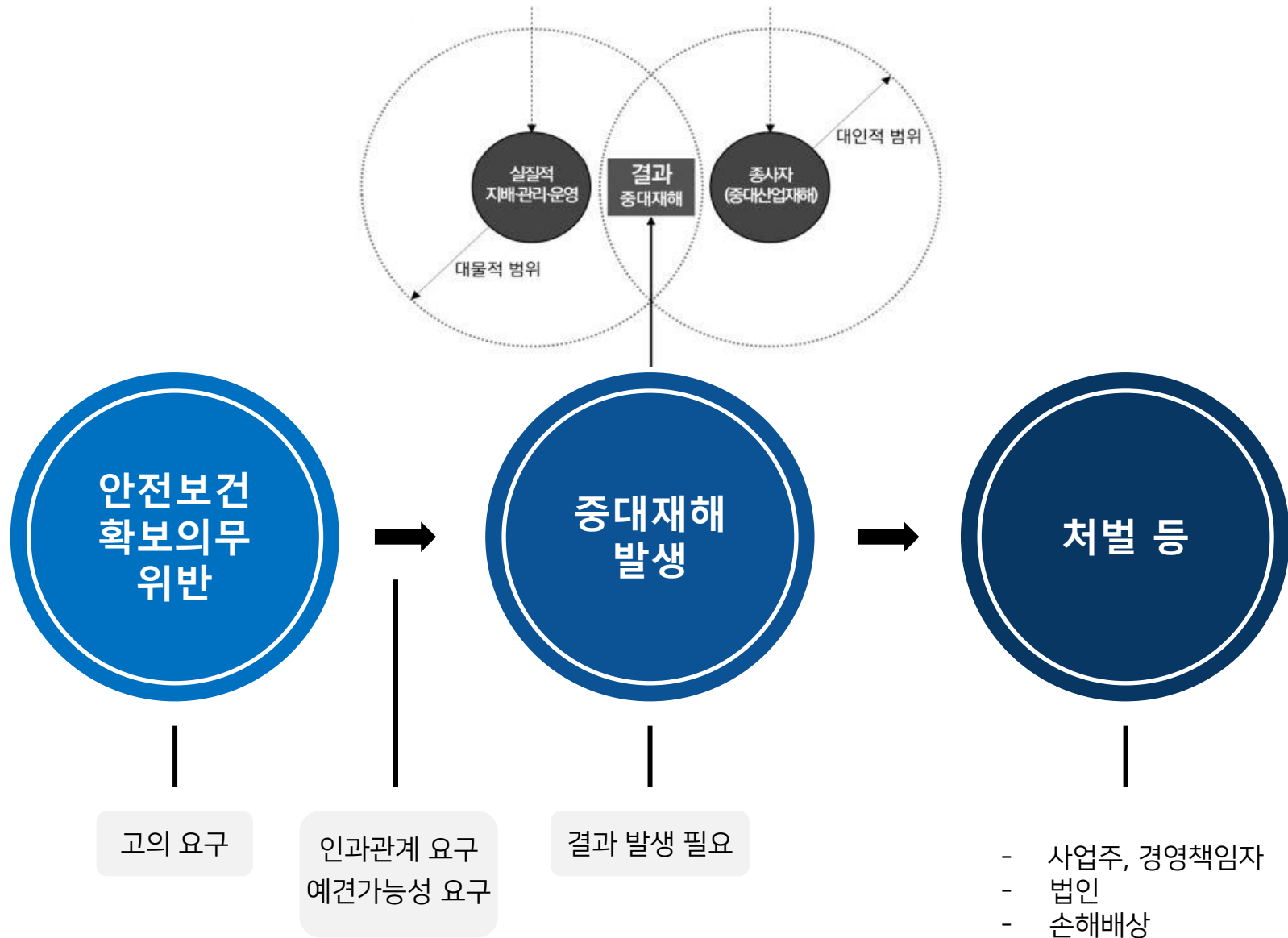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주요이슈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함에도 인력예산 등 지원 대책 없이 위험한 작업을 포함한 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에 이른 정황 →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 있음
-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인 개별 공정에서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명령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존재 → 실무상 고의 인정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될 가능성 존재

주요이슈 -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건

1 중대재해 1호 사건:S 산업

- ✓ 양주시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지관리법, 광산안전법 등 적용 가능

2 중대재해 2호 사건:Y건설

- ✓ 성남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적용 가능

3 중대재해 3호 사건:Y 회사

- ✓ 여수국가산업단지 Y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8명 사상(4명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적용 가능

주요이슈 -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건

4 중대재해 4호 사건:H건설

- ✓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5 중대재해 5호 사건:D산업

- ✓ 경남 창원외 한 제조 기업 직원 16명에게서 독성물질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 발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6 중대재해 6호 사건:S사

- ✓ 시멘트 제조기업의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주요이슈 - 사망재해 관련 문제되는 경우

1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망

- ✓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경우

- ✓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중대산업재해 포함 안 됨. 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3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 ✓ 원칙적으로 부정. 단, 자살행위가 직무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주요이슈 - CSO(최고안전책임자) 도입의 문제

10대 그룹 CSO는 누구 (매일경제 2022. 2. 20.)

10대그룹 최고안전책임자

	회사	성명	담당	직급
삼성	삼성전자	김경진	DX 글로벌 EHS센터장	부사장
		남석우	DS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부사장
	삼성물산	김규덕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부사장
	삼성중공업	윤종현	최고안전책임자	부사장

	회사	성명	담당	직급
현대차	현대차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
	현대모비스	김진환	안전보건부문장	상무
	현대제철	박종성	고로사업본부장 겸 안전보건총괄	부사장
	현대로템	김익수	경영지원사업부장	상무
	현대건설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	전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SK	SK하이닉스	곽노정	안전개발제조총괄	사장
	SK텔레콤	강종렬	최고안전책임자	사장
	SK에코플랜트	윤창석	ESG센터장	부사장
	SK이노베이션	김종화	SHE부문장	부사장
	SK실트론	김학승	SHE경영단장	부사장

	회사	성명	담당	직급
LG	LG전자	배두용	대표이사 겸 CRO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경영지원센터장 겸 CRO	사장
	LG디스플레이	김성희	최고안전환경책임자	전무
	LG화학	김영환	최고안전환경책임자	전무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관리책임자	상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롯데	롯데지주	이창화	안전관리사무국장	상무
	롯데케미칼	김연섭	ESG경영본부장	전무
	롯데건설	김진	안전보건경영실장	상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포스코	포스코	김지용	안전환경본부장	임원
	포스코건설	송치영	안전보건센터장	임원
	포스코케미칼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	임원

	회사	성명	담당	직급
한화	(주)한화 방산부문	김상선	안전환경실장	상무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권기영	울산총괄임원	부사장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김은식	한국공장장	전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류재규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한화임팩트	이인재	PTA사업부장	부사장
	한화건설	고강석	안전환경경영실장	전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GS	GS칼텍스	이두희	각자 대표 겸 최고안전책임자	사장
	GS건설	우무현	최고안전책임자	사장
	GS리테일	정영태	최고안전책임자	상무
	GS E&R	이재승	최고안전책임자	전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진율	최고안전관리책임자	사장
	현대미포조선	서용원	최고안전관리책임자	부사장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최고안전관리책임자	부사장
	현대오일뱅크	고영규	안전생산본부장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박찬혁	글로벌생산본부장	전무

	회사	성명	담당	직급
신세계	신세계	이준석	안전보건담당	담당
	이마트	박승학	안전품질담당	상무
	신세계건설	민일만	HSE본부장	전무

주요이슈 - CSO(최고안전책임자) 도입의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고려
- 법 문언상 "또는"의 의미가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 모두라고 해석됨
- 법이 부과한 의무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하여 형사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함

✓ CEO 법적 리스크의 저감을 위한 목적의 CSO 도입은 신중할 필요 있음

- ▶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CEO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함
- ▶ CEO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함

✓ CEO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보건에 주안점을 둔 CSO 관리체계 구축

- ▶ CEO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 ▶ CEO는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안전보건업무에만 집중하기 곤란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이 방대하여 보좌할 최고안전책임자가 필요함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검토사항

1. 동종사고 여부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2. 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 의견청취 절차/개선방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령 제4조제7호)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여부 → 반기 1회이상 점검·필요한 조치(령 제4조제3호)
4. 필요한 인력 · 장비 · 시설 미비 여부 →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령 제4조제4호)
5.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 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 ·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령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6. 급박한 위험 → 위험발생시 대비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령 제4조제8호)

YTN

[단독] '중대재해법 위반' 이틀에 한 번...기소는 단 '1건'

입력 2022.09.26. 오전 6:47 · 수정 2022.09.26. 오전 7:07 기사원문



최근 관련 기사



▲ 대흥알엔티의 성형공정 국소배기장치 모습.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엔티지회>

노동자들의 집단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대표와 대흥알엔티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기소·불기소는 유해요인의 확인·개선 여부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흥알엔티는 기소 직전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안전성이 미흡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식적 조치만으로 법망을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노동자 16명이 올해 2월 독성 간염을 일으킨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을 판정받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의 대표 B(65)씨는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미이행) 혐의만 적용됐다.

최근 관련 기사

검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판단

7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대흥알앤티는 올해 2월 '전처리 세척공정'의 국소배기장치 풍속이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포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 하지만 검찰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검찰은 △유해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예방 예산 편성 여부 등으로 나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조3호)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확인·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이후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 무혐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해요인 확인·개선'이다. 검찰은 대흥알앤티와 B씨가 지난해까지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확인된 일부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만약 일부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매일노동뉴스 2022. 09. 30.

서울신문

PICK ⓘ

‘시행 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짚어보니...처벌 아닌 예방 집중해야

입력 2022.09.10. 오전 7:02 기사원문



박찬구 기자 >



가



국회 입법조사처, 환노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
고의·반복적 의무 방치시 형사제재 검토 필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하는 입법 돼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방치하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 전문가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행령 상의 제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2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보고서에서 시행 8개월째를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관련 기사

노동부는 그동안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달 중순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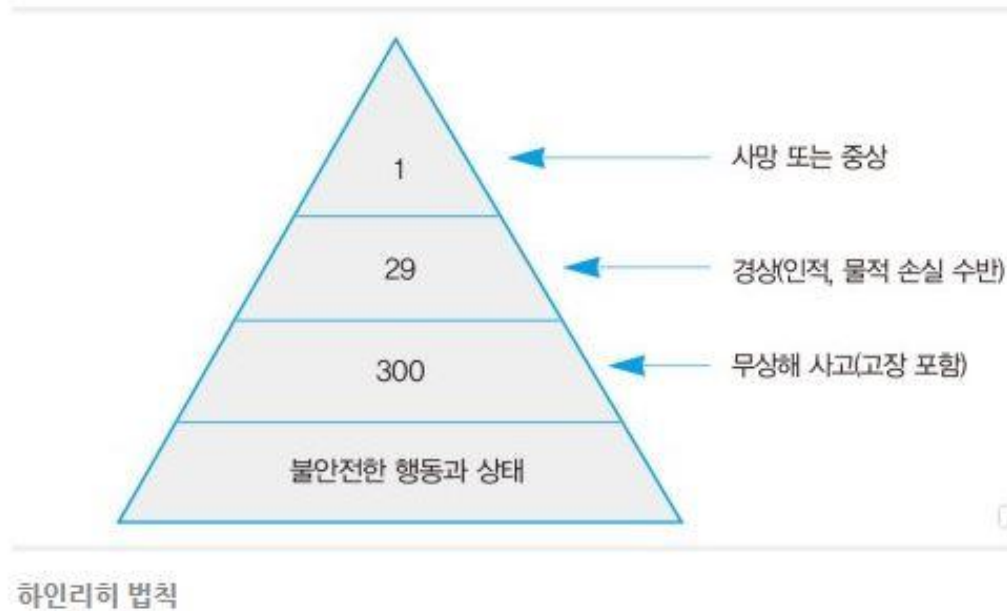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과 경총 등 재계의 개정 요구안에도 경영책임자 규정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달만 해도 노동부는 기재부의 개정 방안을 '의견'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이 잘 작동되도록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모호한 표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이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개정 방안을 통해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레디앙 2022. 09. 29.

마무리하며 – 하인리히(Heinrich's Law) 법칙



중대재해 결과 발생 까지는 329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수 고 하 셧 습 니 다

